

미국 지방법원  
버지니아 주 동부  
알렉산드리아 지방

MICROSOFT CORPORATION, 워싱턴  
소재 기업,

원고,

대

JOHN DOES 1-18, 컴퓨터 봇넷을 제어하여  
MICROSOFT 와 그 고객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민사소송 번호:

봉인하여 제출

**[상정] 일방적 임시 금지 명령 및  
예비 금지명령에 관한 사유 제시 명령**

원고 Microsoft Corp. (“Microsoft”)는 (1)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S.C. § 1030), (2)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1), (3) 연방상표법(Lanham Act) (15 U.S.C. §§ 1114(a)(1), 1125(a), (c)), (4) 불법침해, 부당 이득, 횡령 등에 관한 일반법 등에 따라 금지명령구제 및 기타 구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Microsoft 는 연방 민사소송 규칙의 규칙 65(b), 15 U.S.C. § 1116(d) (연방상표법) 및 28 U.S.C. § 1651(a)(All-Writs Act)에 따라 응급 임시 금지 명령 및 예비적 금지명령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 제시 명령을 일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확인 사실 및 법적 판결**

원고의 응급 임시 금지명령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선언문, 증거물, 각서 등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판결을 내리는 바입니다.

1. 본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모든 당사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고는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18 U.S.C. § 1030),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18 U.S.C. § 2701), 연방상표법(15 U.S.C. §§ 1114, 1125) 및 동산 불법침해, 부당이득, 횡령, 등에 관한 일반 법률에 따라 피고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18 U.S.C. § 1030),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18 U.S.C. § 2701), 연방상표법(15 U.S.C. §§ 1114, 1125) 및 동산 불법침해, 부당이득, 횡령 등에 관한 일반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사례에 참여했거나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Microsoft 는 그러한 행동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3. Microsoft 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Bing,” “Internet Explorer,” “Microsoft” 및 “Windows”라는 등록 상표를 소유합니다.

4. 피고가 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한되고 명령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의 지속적인 위반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Microsoft 의 임시 금지명령 및 예비 금지명령에 과한 근거 제시 명령 신청서(“TRO 신청서”) 요약본에 명시된 증거와 이에 수반하는 선언문 및 증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피고가 전술한 법률 위반 행위에 참여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a. 허가 없이 권한을 벗어나서 Microsoft 와 그 고객의 보안 컴퓨터 및 Windows 운영체제에 고의적으로 액세스하고 악성 코드를 전송하여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봇넷의 일부가 되도록 함.
- b. 봇넷을 구성, 배치 및 운영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전송.
- c. Microsoft 의 Bing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를 포함하여 인터넷 검색 엔진 결과를 제어하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클릭을 Microsoft 와 고객의 허가나 동의 없이 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장소로 리디렉션.
- d. Microsoft 또는 그 고객의 허가나 동의 없이 Microsoft 의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그 브라우저를 통해 클릭을 생성

- e.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의 무허가 버전 및 인스턴스를 제작하고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상표를 무단 복제하고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의 그러한 버전과 인스턴스가 Microsoft 와 관련이 있거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고객을 기만.
- f. Microsoft 의 Bing 검색 엔진 웹 페이지와 기능의 무허가 버전 및 인스턴스를 제작하고 Microsoft 의 Bing 상표를 무단 복제하고 Microsoft Bing 검색 엔진의 그러한 버전과 인스턴스가 Microsoft 와 관련이 있거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고객을 기만.
- g. Microsoft 또는 그 고객의 허가나 동의 없이 Microsoft 의 고객을 Microsoft 의 무단 복제 상표가 포함된 웹 사이트로 리디렉션하고 그러한 웹 사이트가 Microsoft 와 관련이 있거나 승인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고객을 기만.
- h. 개인 검색 엔진 조회 및 용어를 포함하여 허가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 i. 악성 코드 배포.

5. 그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Microsoft 와 그 고객 및 일반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본 법원에서 피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불법 행위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6. 피고가 부록 B 에 열거된 IP 주소와, 부록 A, B, C 에 열거된 인터넷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을 통해 호스트되거나 운영되는 봇넷 명령 및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판매,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이나 은폐함으로써 발생하거나, 피고에게 본 소송에 대해 사전 통지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피고가 불법행위 증거를 폐기 또는 은폐함으로써 본 법원이 효력이 있는 최종 구제책을 부여하는 능력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있을 줄 수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Microsoft 의 TRO 신청서와 이에 수반되는 선언문 및 증거물에 명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Microsoft 는 다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a. 피고는 미국법을 직접 위반하고 Microsoft 와 그 고객 및 일반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 b. 피고는 Microsoft, 그 고객, 일반인에게 명확한 손해를 주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 c. 피고는 문제의 IP 주소 및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을 통해 운영되고 전파되는 Microsoft의 TRO 신청서에서 문제의 유해한 악성 및 상표권 침해 봇넷 명령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IP 주소,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에 저장된 불법행위의 정보 및 증거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d. 피고가 Microsoft의 소송에 대해 통지를 받았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Microsoft의 일방적 비상 구제책 요청은 Microsoft측의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불법 행위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Fed. R. Civ. P. 65(b), 15 U.S.C. § 1116(d) 및 28 U.S.C. § 1651(a)에 따라 이 피고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명령을 내려야 할 충분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으므로 Microsoft는 피고에게 Microsoft의 발의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8. 피고는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 위치하는 Microsoft의 고객 컴퓨터에 대해 특히 불법행위를 했으며,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 소재하는 Leaseweb의 IP 주소, 미국과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 위치하는 최고 수준의 도메인 레지스트리인 Verisign과 Public Interest Registry가 관리하는 “.com”, “.org” 및 “.cc” 도메인 등을 사용하여 불법행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9. 피고는 명령 및 제어 소프트웨어와 악성 봇넷 코드를 비롯하여, 컴퓨터, 서버, 전자식 데이터 보관 장치 또는 미디어에서 봇넷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를 호스팅하기 위해 부록 B에 명시된 데이터 센터 및/또는 인터넷 호스팅 제공업체를 사용하여 불법 행위에 참여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10. 피고가 발생시킨 피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부록 B에 명시된 IP 주소의 데이터와 증거는 보존되어야 하며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에스스로에 보관해야 하며, 그러한 IP 주소와 관련된 피고의 컴퓨팅 리소스는 인터넷 연결을 해제해야 하며, 그러한 IP 주소와 관련된 피고 컴퓨터 리소스에 피고가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그러한 컴퓨터 리소스에 위치하는 데이터와 증거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11. Microsoft의 등록 상표 사본을 무허가 및 라이선스 없이 생성, 배포 및 제작에 관여하고, ISPrime LLC 및 Leaseweb USA, Inc.,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호스팅하는 피고의 가장 최근 활성 명령 및 제어 IP 주소와 관련하여 기타 유해한 행동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삭제, 은닉, 은폐 또는 액세스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즉시 중지하고 본 사건에 대한 향후 기소를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며,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는 관할 지역의 연방 보안관 부록 B에 열거된 IP 주소와 관련된 피고의 모든 컴퓨터, 서버, 전자식 데이터 보관 서비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미디어를 몰수 및 압수한 후 제 3자 에스스로 서비스 업체인 Nardello & Co. LLC(1111 Brickell Avenue, 11th Fl., Miami, FL 33131 소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12. 피고는 봇넷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명령 및 제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호스트하기 위해 본 명령의 부록 A, B 및 C에 명시된 인터넷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에 참여했다고 볼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가 야기한 피해를 즉시 중단하기 위해 부록 A, B 및 C에 명시된 각 피고의 현재 및 잠정적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은 즉시 보안 서버로 리디렉션되어야 하며, 권한 이름 서버를 [ns3.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ns3.microsoftinternetsafety.net) 및 [ns4.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ns4.microsoftinternetsafety.net)로 변경하고, 이 이름 서버 [ns3.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ns3.microsoftinternetsafety.net)와 관련된 IP 주소를 157.56.78.93로 변경하고 이름 서버 [ns4.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ns4.microsoftinternetsafety.net)와 관련된 IP 주소를 157.56.78.73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절차를 밟아 Microsoft와 협력하여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 리디렉션을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사용하여 봇넷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할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13. 피고에 의한 피해를 즉시 중지하기 위해 HTML 웹페이지를 리디렉션된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에 표시하여, 피해자의 컴퓨터가 악성 봇넷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악성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14. Microsoft, 호스팅 회사, 연방 보안관(U.S. Marshal's Service), 도메인 레지스트리와 등록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본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즉시 중단하기 위해 부록 A, B 및 C에 명시된 IP 주소,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과 관련하여 이 명령에 명시된 구제책은 동부 서머 타임 기준으로 2013년 2월 6일 오전 9시 30분이나 Microsoft가 요청한 본 명령의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15. 즉각적인 명령, 예비 금지명령 공청회 통지, 공식적이며 대안적인 방법을 통한 이의제기 서비스 등을 허락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이 경우, 상황의 긴박성 및 즉각적 구제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의 서비스 방법은 법률로 허용되고, 정당한 법 절차를 충족하고, Fed. R. Civ. Pro. 4(f)(3)을 충족하며 피고에게 즉각적인 명령, 예비 금지명령 공청회, 본 소송에 대해 적절하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해외 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Service Abroad) 또는 유사한 조약을 통해 그러한 조약에 가입한 외국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전달, (2) 피고가 도메인 이름 고급 등록자와 하위 도메인 서비스에 제공한 연락처 정보로 이메일, 팩스, 우편물을 통한 전달 및/또는 직접 배송을 하거나 피고가 도메인 이름 또는 하위 도메인 등록 동의서에서 동의한 대로 전달, (3)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 웹 사이트 및/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신문에 고지.

#### 임시 금지명령 및 근거 제시 명령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피고, 그 대리인, 피고와 적극 제휴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은 (1) Microsoft 및 그 고객의 보안 컴퓨터, Windows 운영체제에를 감염시키고 봇넷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허가 없이 액세스하고 의도적으로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코드를 발송, (2) 봇넷을 구성, 배치 및 운영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발송, (3) Microsoft의 Bing 검색 엔진과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포함한 검색 엔진 결과나 브라우저를 제어, (4) 검색 엔진 결과나 브라우저 활동을 리디렉션하거나, 무단으로 “클릭수”를 생성, (5) 검색 용어와 키워드를 포함한 개인 정보 수집, (6) 여기에 명시된 IP 주소, 도메인, 하위 도메인이나 모든 장소의 봇넷 구성요소나 요소를 통해 TRO 신청서에 설명된 봇넷을 구성, 배치, 운영 또는 참여하거나 촉진, (7) Microsoft 나 그 고객에게 합법적으로

소속된 것이나 Microsoft 가 독점적 소유권을 가진 것을 유용, (8) Microsoft, 그 고객, 일반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유는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합니다.

**또한 다음을 명령합니다.** 피고, 그 대리인 및 피고와 제휴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은 (1) Microsoft 의 등록 상표이며 등록 번호가 2872708, 2463526, 2277112 및 3883548 인 “Bing”, “Internet Explorer”, “Microsoft” 또는 “Windows”를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위반, (2) Microsoft 의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Bing 검색 엔진, 상표의 무단 사본, 버전, 인스턴스를 제작하거나 Microsoft 가 전술한 것과 관련이 있거나 승인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 (3) 피고의 행동, 제품 또는 서비스, 피고나 피고의 행동에 대해 기호, 단어, 디자인 또는 진술을 통한 거짓 또는 기만적인 지명, 의사표시 또는 설명으로서 Microsoft 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주거나 피고에게 불공정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것, (4) Microsoft 가 후원하거나 제휴함으로써 피고의 행동, 제품, 서비스가 생성된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고의 행동, 제품 또는 서비스를 Microsoft 의 것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합니다.

**또한** 부록 A, B, C 에 명시되었으며 현재 등록된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 도메인 등록, 하위 도메인 서비스, 등록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 A. 본 명령을 수령하는 시점에 WHOIS 또는 유사한 연락처와 식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고급 등록자 또는 하위 도메인 서비스로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을 유지
- B.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은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본 명령에 명시된 대로 해결
- C. 고급 등록자 및/또는 하위 도메인 서비스에 대한 피고나 제 3 자의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의 양도나 수정을 금지
- D.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은 권한 이름 서버를 [ns3.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3.microsoftinternetsafety.net) 및 [ns4.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4.microsoftinternetsafety.net) 로 변경하고, 이 이름 서버 [ns3.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3.microsoftinternetsafety.net) 와 관련된 IP 주소를 157.56.78.93 로 변경하고 이름 서버 [ns4.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4.microsoftinternetsafety.net) 와 관련된 IP 주소를 157.56.78.73 으로 변경하거나 Microsoft 와 협력하여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 리디렉션을 하도록 다른 적절한 절차를 밟아 피고가 봇넷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안 서버로 리디렉션해야 합니다.

E. 도메인 고급 등록자 및/또는 하위 도메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DNS 를 통해 전술한 변경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칩니다.

F.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을 사용하는 피고를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보존합니다.

G. 본 명령 이행을 위해 도메인 등록, 레지스트리 또는 하위 도메인 서비스와 의사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에게 통지 또는 경고하거나 의사교환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명령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부록 A, B, C 에 명시되었으며 현재 등록된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 도메인 등록, 하위 도메인 서비스, 등록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A.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을 Microsoft 가 관리하게 하며 이 경우, Microsoft 는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에 대한 호스팅 및 관리 권한을 가지는 등록자입니다. 도메인은 후원하는 고급 등록자 MarkMonitor 의 Microsoft 의 계정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B. WHOIS 등록자, 관리, 청구 및 기술 연락처와 식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Domain Administrator  
Microsoft Corporation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  
United States  
전화번호: +1.4258828080  
팩스: +1.4259367329  
domains@microsoft.com

C.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은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본 명령에 명시되거나 Microsoft 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해결합니다.

D.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은 권한 이름 서버를 [ns3.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3.microsoftinternetsafety.net) 및 [ns4.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4.microsoftinternetsafety.net) 로 변경하고, 이 이름 서버 [ns3.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3.microsoftinternetsafety.net) 와 관련된 IP 주소를 157.56.78.93 로 변경하고 이름 서버 [ns4.microsoftinternetsafety.net](https://ns4.microsoftinternetsafety.net) 와 관련된 IP 주소를 157.56.78.73 으로 변경하거나 Microsoft 와 협력하여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을 Microsoft 가 제어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봇넷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지정합니다.

E. 본 명령 이행을 위해 도메인 등록, 레지스트리 또는 하위 도메인 서비스와 의사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에게 통지 또는 경고하거나 의사교환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명령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15 U.S.C. §1116(d)과 관련하여 위반 마크를 포함하는 피고의 소유물, 위조 마크를 제조하는 방법, 위조 마크를 제조 및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 ISprime LLC 및 Leaseweb USA, Inc.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보유하는 관련 기록 등을 압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A. 전술한 데이터 센터와 호스팅 제공업체에서의 압수는 동부 서머 타임 기준으로 2013년 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되며 본 명령이 발효된지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압류는 2일 이내에 모든 항목을 압수할 때까지 매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미국 연방 보안관이 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데이터 센터 및 호스팅 제공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미국 연방보안관은 본 명령 이행을 위해 Microsoft 와 그 변호사와 협력하여 서버를 무력화하고 압류함을 동시에 이행하며 본 소송의 계류 중 피고가 봇넷을 이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지시 받습니다. 그러한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 해당 관할권의 미국 연방 보안관이 지정됩니다.

- a. District of New Jersey  
U.S. Marshal: Juan Mattos Jr.  
U.S. Courthouse  
50 Walnut Street  
Newark, NJ 07102  
(973) 645-2404
- b.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U.S. Marshal: Robert Mathieson  
CDUSM: John O. Bolen  
401 Courthouse Square  
Alexandria, VA 22314  
(703) 837-5500

B. 미국 연방보안관과 부모안관은 전술한 압수 분야의 Microsoft의 변호사 및 법의학 전문가와 동행하여 피고의 컴퓨터 리소스, 명령 및 제어 소프트웨어와 압수된 기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보관하며 보유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보안관은 미국 연방보안관, Microsoft의 법의학 전문가 및/또는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결정한 대로 위에 명시된 호스팅 컴퓨터의 피고 IP 주소나 피고의 컴퓨터, 서버, 전자식 데이터 저장 장치나 미디어 등의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이미지를 압수합니다. 위에 명시된 호스팅 기업에서 IP 주소와 관련된 피고 서버와 최고 3 시간의 인터넷 트래픽은 그러한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기 전에 보존해야 합니다.

C. Nardello & Co. LLC(1111 Brickell Avenue, 11th Fl., Miami, FL 33131 소재)는 본 명령에 따라 압수되고 보존된 증거의 관리인 역할을 하며, 제 3자 배상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의 재산 압류 및 소지와 관련된 행동, 사건 또는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보안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미국 연방보안관은 압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D. 그러한 압수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연방보안관은 본 명령의 사본을 제공하고, 본 명령의 조건을 이행하며, 본 명령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ISprime LLC 및 Leaseweb USA, Inc.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보안관은 본 명령의 조건을 이행하고 컴퓨터, 서버, 전자식 데이터 보관 장치, 미디어, 방, 클로짓, 캐비닛, 차량, 컨테이너 또는 책상이나 문서의 내용 또는 연결 상태를 검사하고 본 명령이 금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피고가 사용하는 장비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록 B의 IP 주소와 관련하여 인터넷 호스팅 제공업체는 다음을 이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A. 본 명령에 명시적으로 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 피고의 대리인, 리셀러, 기타 개인이나 컴퓨터는 부록 B에 명시된 IP 주소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함.

B. 부록 B에 명시된 IP 주소에 할당되거나 이와 관련된 컴퓨터, 서버, 전자식 데이터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미디어를 완전히 비활성화하고, 여기에 명령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내부 네트워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고, 피고의 대리인 및 다른 모든 개인이 액세스할 수 없도록 차단.

C. 본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부록 B에 명시된 IP 주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중지.

D.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이 IP 주소나 다른 개인과 관련하여 본 명령을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E. 부록 B에 명시된 IP 주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본 명령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백업” 시스템, 방식, 서비스에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접근하는 것을 무력화하고 차단.

F. 부록 B에 명시된 IP 주소에 대한 연결이나 통신 시도를 기록.

G. 개인 또는 법인 이름, 우편물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와 전화번호, 유사한 연락처 정보(청구서, 사용량, 액세스 및 연락 기록과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의 IP 주소 액세스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 문서, 로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부록 B에 명시된 IP 주소를 운영 또는 제어하는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을 식별하고 연락하기에 충분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보존, 보관 및 제작하여 Microsoft에게 제공.

H. 본 명령을 위해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에게 통지 또는 경고하거나 의사교환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명령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지서나 경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I. 피고와 관련되지 않은 부록 B에 열거된 피고의 IP 주소에 호스트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부록 B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IP 주소로 전송. 새로운 IP 주소 콘텐츠 또는 소프트웨어의 비당사자 소유자에게 알리고 Microsoft의 법률 고문인 Gabriel M. Ramsey(Orrick Herrington & Sutcliffe, 1000 Marsh Road, Menlo Park, CA 90425-1015 소재), (전화: 650-614-7400)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하도록 안내.

J. 사무실, 시설,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액세스 제공을 포함하여 본 명령의 조항을 구현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고 본 명령 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보안관, Microsoft, Microsoft의 변호사 및/또는 대리인이 직접 감독하고 본 명령을 피고가 이행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또한 다음을 명령합니다.** 본 명령의 사본, 예비 금지명령 공청회 통지서, 불만사항 서비스는 (1) 미국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피고에게 직접 전달, (2) 해외의 연락처를 제공한 피고에게 해외 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Service Abroad)을 통해 직접 전달, (3) 부록 A, B, C에 명시된 도메인 및 IP 주소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호스팅하는 데이터 센터, 인터넷 호스팅 제공업체, 도메인 고급 등록자, 하위 도메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고가 제공한 이메일, 팩스, 우편물을 통한 전달, (4) 피고에 대한 통지서를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 웹 사이트 및/또는 신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을 명령합니다.** 연방 민사소송 규칙 65(b)에 따라 피고는 2013년 2월 \_\_\_\_일 \_\_\_\_시에 법원에 출두하여 이 법원이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판결이 보류되었고 본 명령의 전술한 규정으로 일시적으로 행동을 금지하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는 법원 등기소에 현금으로 \$200,000의 보석금을 지불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또한 다음을 명령합니다.** 피고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Microsoft의 예비 금지명령 요청에 대한 공청회로부터 2일 전에 진술서, 선언서, 발의 전문 보고서 또는 선언문이나 법적 각서에 답변할 때 Microsoft의 변호인 역할을 합니다.

Microsoft는 법원에 보완적 선서, 자료, 진술서 또는 각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금지명령 공청회가 열리기 최소한 1일 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또는 익일 배송, 팩스 또는 이메일 및 문서로 서비스를 수행하고, 본 조항에 열거된 날짜의 오후 4시(동부 표준 시간)까지 기타 당사자에게 팩스 또는 전자식 메일, 문서 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2013년 1월 \_\_\_\_일 입력.

## 미국 지방법원 판사